

제21대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임시회의 개최 결과

〈 관련 근거 〉

- 해양경찰법 제11조(해양경찰청장)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(회의)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3명 이상의 위원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☐ 일시/장소 : '26. 9.16.(수) 14:00 ~ 15:30 /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
☐ 참 석 자

- (주재·참석) 위원장이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주재
 - ┌ (위원회) 위원장, 총무위원, 민만기·이희정 위원 등 4명 출석
 - ※ 지은석·류은영 위원 불참
 - └ (해수부) 해양수산부장관 온라인 출석
 - └ (해경청) 해양경찰청장 후보자, 기획조정관, 기획재정담당관, 인사담당관, 위원회담당관 등 5명 위원회 회의실 출석

☐ 상정 안건

-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해양수산부 제출

☐ 심의·의결 결과 : 원안 의결